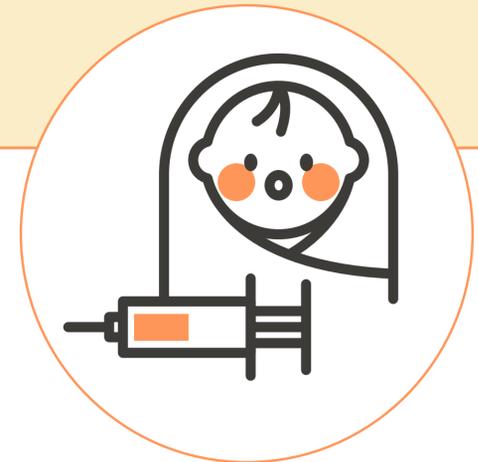




# 소아응급의료 공간적 접근성 분석



## 들어가며

소아응급의료는 긴급한 진료를 요하는 한편, 환자의 연령 및 발달 상태에 따른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므로 소아청소년 전문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

응급환자가 응급의료서비스를 받기까지 물리적 이동시간은 생명 및 건강, 치료 후 회복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

이번 호에서는 소아응급환자의 물리적 이동과 응급의료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한 공간적 의료접근성 분석 결과를 소개



# 소아응급의료 이용현황

## ■ 건강보험 청구자료 분석을 통해 파악한 만 0~12세 미만 소아응급환자의 2017~2022년 의료이용 건수

-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의 영향으로 의료이용이 감소한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전년대비 증가
- 소아응급환자 수 및 요양급여비용 또한 유사한 양상

## ■ 물리적·지리적 접근성은 서비스 제공 지점부터 이용자까지의 물리적 거리 또는 이동시간을 의미

[표 1] 만0-12세 미만 인구수 및 응급의료 이용 현황

(단위: 명, 건, 명, 백만원)

구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추세선
소아 인구 수	5,381,193	5,268,033	5,084,329	4,892,439	4,710,883	4,499,362	
청구건수	255,670	317,957	373,810	230,204	302,704	521,727	
소아 환자 수	192,947	234,649	275,155	189,932	244,468	401,192	
요양급여비용	67,296	92,848	118,198	90,724	133,492	225,575	

# 공간적 접근성 분석: 2SFCA 방법

## ■ 2SFCA 방법 (Two-step floating catchment area method)

- 수요지를 기준으로 임계거리 내에 도달 가능한 자원의 수요와 공급 비율을 측정하여 공간적 접근성을 산출
- 2단계의 연산절차를 통해 수요 중심지에서 임계 거리 내에 도달 가능한 자원의 수요-공급 비율을 공간적 접근성 지표로 정량화
  - (1단계) 공급자 위치를 중심으로 임계거리 내 수요-공급 비율을 계산
  - (2단계) 수요자 위치를 중심으로 임계거리 내 도달 가능한 공급자의 수요-공급 비율을 합산

## ■ 소아응급의료 공간적 접근성 지표는 단위 지역의 소아인구 10만명 당 30km 이내에 도달 가능한 소아응급의료 청구기관의 소아청소년과 의사(전문의·전공의) 수로 설정

	수요	공급
지리정보	시군구지역(249개) 지리 중심점	소아응급의료 청구기관 주소지
인구인력 정보	시군구지역(249개) 소아 인구 수	소아응급의료 청구기관 소아청소년과 의사 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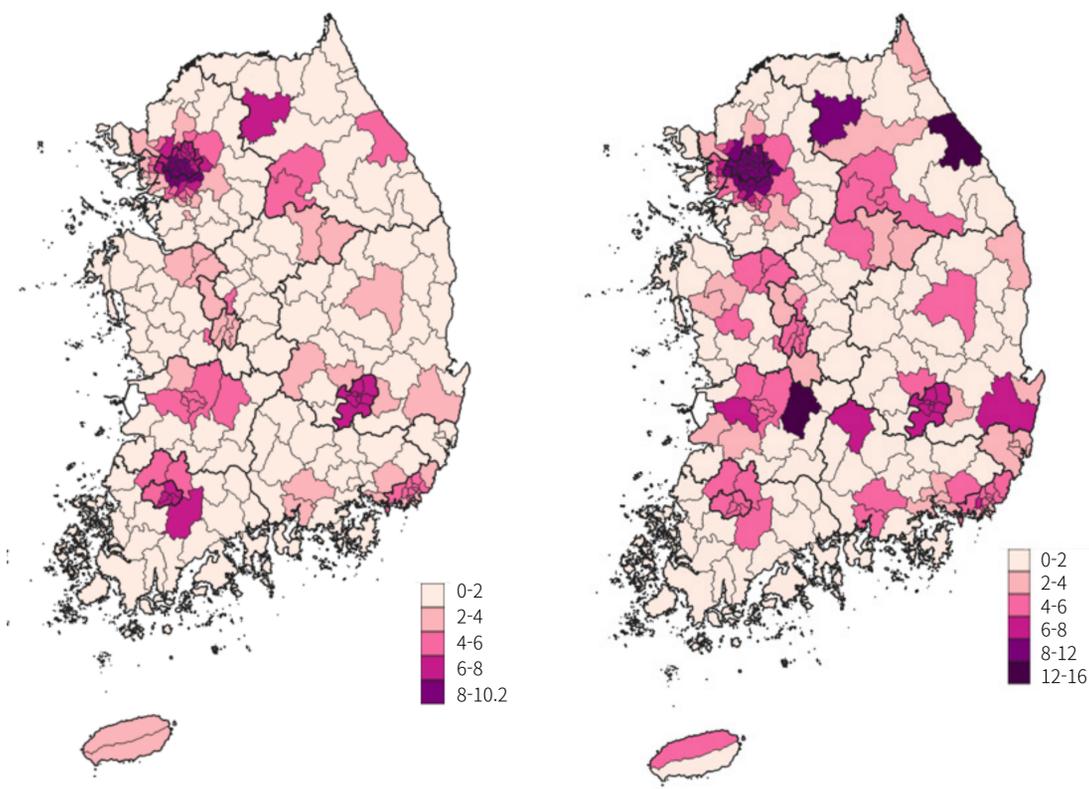
↓

지역별 의료접근성 산출(2SFCA 지표)

[그림 1] 소아응급 의료접근성(2SFCA 지표) 분석 개요

# 소아응급의료의 공간적 접근성 분석

- 소아청소년과 의료 인력 감소에 따른 접근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전공의 지원 미달이 시작되기 이전인 2017년과 2022년의 2SFCA 지숫값 비교
- 2017년 시군구 249개 지역의 2SFCA 지표 평균은 2.96, 표준편차는 2.87이었으며 2022년에는 평균 3.85, 표준편차 3.56으로 측정
- 2017년 지숫값이 10이상인 지역은 1개였으나 2022년에 22개 지역으로 늘어났으며, 지숫값이 0인 지역은 63개에서 54개로 감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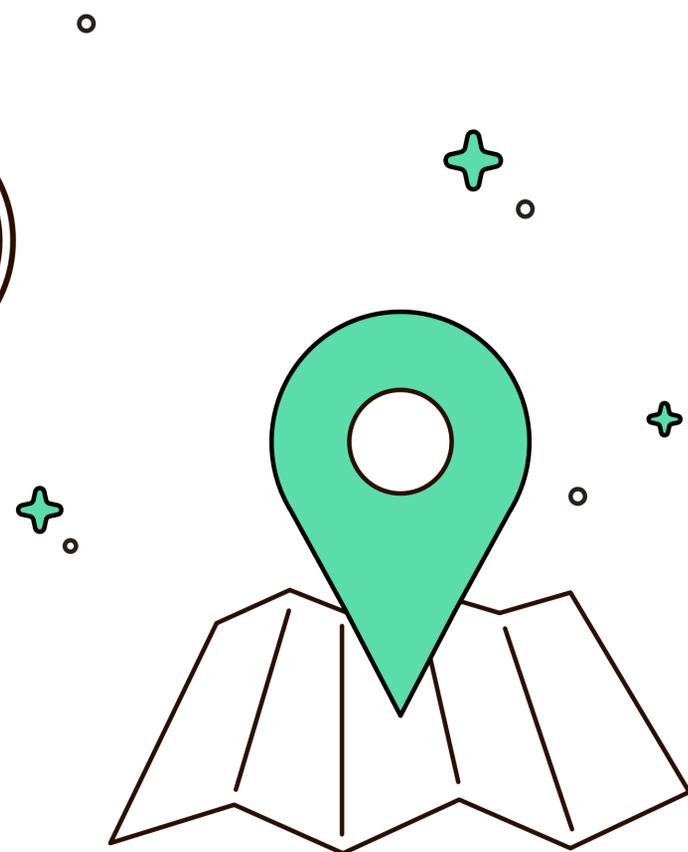
- 의료기관에서 전공의 지원 감소로 인한 인력 공백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의 수를 늘린 반면 응급의료 수요에 해당하는 출생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(2017년에 비해 2022년 의료 접근성 지표 평균이 증가)

[그림 2] 소아응급 의료 접근성 지표(2SFCA) 단계도 - 2017년(좌), 2022년(우)

# 소아응급의료의 공간적 접근성 분석

## 나가며

- 적절한 시간내에 소아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응급진료를 하기 위해서 의료 기관 내 소아청소년과 전문 의료 인력의 확보가 중요
- 소아응급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아청소년과 진료의 특성, 응급의료기관 및 대형병원의 지리적 위치,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의료 자원 수를 산출하고 이에 맞춘 정책 계획 수립과 추진이 필요





# 부패·공익신고

## 비실명 대리신고와 함께 해요



**변호사가 신고자를 대리하여 변호사 명의로 신고 접수**

**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봉인되어 신분 유출 원천 차단**



### 비실명 대리신고 이용 방법

신고자  
변호사 선임

변호사 대리신고  
(신고자 인적사항 봉인 제출)

위원회 신고 접수  
(위원회는 신고자 동의 없이  
봉인된 자료 열람 불가)

- 내부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를 통해 무료로 대리신고할 수 있습니다.  
\* 자문변호사 명단은 청렴포털\_부패공익신고(www.clean.go.kr)에서 확인하세요.
- 비실명 대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.
- ▲부패행위(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포함), ▲ 공익침해행위, ▲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, ▲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행위에 대해 비실명 대리신고할 수 있습니다.



### 부패·공익신고자 보호제도

- 🔑 신고자의 인적사항등을 공개하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.
- 🔑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징계·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.
- 🔑 신고를 이유로 신변의 위협이 있는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🔑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사처벌·징계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


상담

국번없이 1398 또는 110